

예산총칙

2017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66,467,032	4,994,011
일반회계	144,805,166	4,344,155
특별회계	21,661,866	649,856
기타특별회계	21,661,866	649,856
의료급여기금	324,902	9,747
주거환경개선사업	500,069	15,002
주차장	20,563,731	616,912
지하수관리	246,691	7,401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26,473	79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,413,691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